



구성원 제안제도 규정

규정번호	2-1-24
제정일자	2016.10.06.
개정일자	2021.08.20
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대학발전과 비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대학 운영에 아이디어 제안 등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대상)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구성원이라 함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3조(범위) 구성원을 통한 제안제도 및 의견 수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2019.11.14. 개정>

1.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에는 교육정책 및 교육품질개선, 대학 중장기 발전 전략, 대학 경영과 조직 및 운영, 행정부서 주요 정책, 행정제도 개선, 교육서비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2.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함, 3A 제안제도 및 교직원 건의사항 게시판,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제도와 매체를 통하여 제안할 사항

3. 학과(전공) 신설, 통합, 명칭변경, 폐지, 정원조정 및 교원의 소속변경 등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사항

제4조(절차) ① 구성원이 제시한 의견 또는 제안은 해당 부서, 관련 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검토 등 의 절차를 거쳐 대학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포상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③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사항, 만족도 조사,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서 본 대학 규정을 통해 별도로 명시된 경우 그 규정의 절차를 따른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5조(환류) ① 의견 제안자는 대학 운영 개선 제안서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고, 제4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해당 부서는 접수한 의견, 제안을 검토하여 제안 내용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, 처리 결과를 의견 제안자에게 안내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